

과업지시서

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(이하 서울시설공단) 장애인콜택시운영처 타이어 정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수요자인 서울시설공단을 “공단”이라 하고 계약하고자 하는 업체를 “계약상대자”라 한다.

1. 계약기간 : 2016. 01. 01 ~ 2016. 12. 31

2. 계약조건

가. 타이어의 규격 : 아래 명기된 규격으로 한다.

품명	규격	단위	예정수량	차명
사계절타이어	215/70R16 6P이상	EA	1,061.07	그랜드스타렉스
	235/60R17 6P이상	EA	40.28	그랜드카니발
	235/65R17 6P이상	EA	99.07	올뉴카니발
	205/75R17.5 6P이상	EA	1.08	카운티
스노우타이어	215/70R16 6P이상	EA	252.64	그랜드스타렉스
	235/60R17 6P이상	EA	9.59	그랜드카니발
	235/65R17 6P이상	EA	23.59	올뉴카니발
	205/75R17.5 6P이상	EA	0.26	카운티
계		EA	1,487.58	

나. 타이어의 재질

- ① 한국산업규격 KSM6750(차량용 타이어)에 적합해야 하여야 한다.
- ② 타이어 생산년도는 장착일 기준 5개월 이내 신제품이어야 한다.

다. 타이어의 형태

종별규격에 맞고 모양 및 두께가 균일하고 흠, 균열, 기포, 이물이 없어야 한다.

라. 납품 및 보관

- ① 납품 타이어의 보관은 “계약상대자”가 차량의 타이어 교체시까지 전량 보관하고 매월 담당자에게 차량번호와 보관 수량을 확인받아야 한다.
- ② 교체가 완료된 타이어 중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“계약상대자”가 보관하고 재사용할 수 없는 제품은 “계약상대자”의 비용부담으로 처리한다.

- ③ 스노우 타이어는 적정량을 타이어 규격별로 구비하여 동절기에 장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체한 타이어는 담당자 확인 후 보관 및 폐기를 해야 한다.
- ④ 계약기간이 종료 시에는 보관 타이어를 후 계약자에게 인도해야 한다.

다. 교체 및 수리

- ① “계약상대자”는 “공단”의 타이어 교체 요구 시 즉시 타이어 교체에 응해야 하며, 이때 필요시 “계약상대자”의 비용으로 휠얼라이언먼트를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교환한 타이어에 이상이 있을시 즉시 교체해 주어야 한다.
- ③ 타이어 펑크 수리 시 무상수리를 원칙으로 한다.
- ④ “공단”의 요구 시 타이어 위치 교환을 무상으로 조치해 주어야 한다

바. 계약보증금 납부 및 귀속

- ① “계약상대자”는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구매예정량 중 최대량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이행(계약)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“계약상대자”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“계약상대자”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계약보증금 전액은 “공단”에게 귀속된다.

사. 계약변경

- ① 계약기간 및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협의 및 합의에 의하여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.

아. 대금지급 방법

- ① “계약상대자”는 매월 1일부터 매월말까지의 차량별 교환내역을 첨부하여 “공단”에게 청구한다.
- ② “공단”은 제1항에 의거 “계약상대자”가 청구한 대금을 정산·확인 후 대금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.

자. 계약해지 등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“공단”은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.

- ① 타이어 보관시설 및 보관상태가 미흡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을 때
- ② “계약상대자”의 사업자 등록이 정지 또는 취소된 때
- ③ “계약상대자”가 “공단”의 요구제품으로 납품하지 아니하거나 납품을 거부한 때
- ④ “계약상대자”가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
- ⑤ “계약상대자”가 하자있는 타이어를 납품한 때

⑥ “공단과 계약상대자”가 특별한 사유로 계약해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때
차. 채권양도 및 하도급의 금지

- ① “계약상대자”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, 기타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“계약상대자”는 본 계약에 의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.

카. 문서의 보관

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“공단”, “계약자”가 기명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타. 관할법원

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송은 “공단”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.

2015 . .

(공단)

- 기 관 명 :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
- 사업자등록번호 : 206-82-04293
- 주 소 :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
- 대 표 자 : 오 성 규

(계약상대자)

- 상 호 :
- 사업자등록번호 :
- 주 소 :
- 대 표 자 :
- 전 화 번 호 :